'22년 설 명절 대비
체불임금 집중관리 기간 운영(1.17.~1.30.)

□ 시, 구·군 체불임금 대책 상황실 운영

- **(신고대상)** 부산시역내 체불임금 현황
- **(신고방법)**
  - 우편 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,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
  - 팩스 : 051-888-6469
  - 전화 : 051-888-6471~4
- **(운영기간)** ′ 22. 1. 17.(월) ~ 1. 30.(일)

□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

- **(신고대상)** 관급공사(공사 및 용역)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
- **(신고방법)**
  - 우편 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, 11층 회계재산담당관
  - 팩스 : 051-888-2249
  - 전화 : 051-888-2234
- **(운영기간)** ′ 22. 1. 17.(월) ~ 1. 30.(일)

□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체불임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

<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(구.체당금) 제도>

-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체불 임금 지급

<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>

-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로 체불임금청산 지원
  * 최고 1억원 이내, 노동자 1인당 1천만원 한도
  * 이자율 1.0% 한시 인하 : 신용보증 3.7% → 2..7%, 담보 2..2% → 1.2%

<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제도>

- 체불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융자(1,000만원 한도)
  * 이자율 0.5% 한시 인하 : 연 1.5% → 1.0%

※ 문의전화 :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-850-0009